



공급업체 비즈니스 행동 수칙

Dole은 공정한 세상을 위한 고무적인 목적으로 추진하는 변화와 지속적 성장의 여정에 있는 건강 웰니스 기업입니다. 연령, 소득, 지역, 인종,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건강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지만, 이는 지구를 희생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삼포요시'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사람, 지구, 그리고 변명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분야를 담은 'Dole 약속'을 출시하였습니다.

Dole은 이 임무에 필수적인 유엔(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Dole은 유엔 글로벌 콤팩트의 조인국일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선언(UDHR),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 국제노동기구 기본원칙 및 노동권 선언에 명시된 모든 인권을 존중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Dole은 사업 활동 및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인권의 영향을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관리할 글로벌 표준을 기준으로 유엔 비즈니스 및 인권 지침(UNGP)에 따라 인권을 충실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Dole은 직원의 대우와 소비자, 공급업체 및 고객과의 비즈니스 거래에서 최상의 윤리적 행동을 보장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행동수칙을 통해 저희의 공유된 가치와 일관된 방식으로 직원, 사무실 및 임원의 행동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공급업체 행동 수칙은 Dole과 거래할 시 당사의 공급업체, 직원, 대리인 및 협력업체(총칭 "공급업체")에게 존중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하며 협상 불가능한 최소 기준을 정하여 지속적인 이행을 명시하고 지원합니다. 공급업체라 함은 Dole과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관계를 맺는 모든 업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Dole은 공급업체 또한 당사 직원들이 준수하는 행동 기준에 맞춰 따라주기를 기대합니다. 공급업체는 활동 전반에 걸쳐 본 행동 수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직원, 대리인 및 협력업체 또한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공급업체 행동 수칙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저희는 헌신과 지속적 개선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저희의 상품과 서비스를 조달하고 공급망 전체에 지속적 가치를 적용하여 저희의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도와준 저희 공급업체의 모든 노고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 여정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기에, 해가 되지 않는 것에서 앞으로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전하고자 노력하면서 때때로 행동 수칙을 개선할 것입니다.

1. 공급업체에 대한 약속

저희의 목표는 Dole과 고객에게 가성비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업체와 협력하며, 책임감 있는 공급망 관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Dole은 우수 관리 기준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오래 유지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기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의 분야에 있는 공급업체와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1.1 비즈니스 행동수칙 기준

아웃소싱을 수행할 때 당사 직원들은 회사의 높은 법적, 윤리적, 도덕적 기준을 공급업체와 공유해야 합니다. 저희의 내부 지침은 예의, 이해의 충돌, 부패, 경쟁법 및 기밀정보 분야에 초점을 두어 조달활동의 규범을 설정합니다. 당사 직원들은 윤리적 행동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알아가도록 권고합니다.

1.2 고충처리제도

공급업체 대표는 권리행사, 고충사항 제출, 노조활동 참여, 법률위반 의심신고 등에 대한 보복으로 차별 또는 계약해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Dole은 공급업체가 당사의 비즈니스 관행의 질문 및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채널을 제공합니다: sustainable.sourcing@doleintl.com.

2. 공급업체에 대한 기대

Dole은 높은 사회, 환경,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공급업체도 유엔 글로벌 콤팩트 원칙, 비즈니스 및 인권에 관한 UN 지침 원칙,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 원칙 및 업무상 권리를 준수할 것을 바랍니다.

2.1 인권

직업안전보건

공급업체는 작업 중, 공급업체의 운영 중 또는 필수 안전 장비 및 절차를 제공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및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무조건 & 보안

공급업체는 공정하고 양질의 근무 조건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분쟁 지역에서 직원, 계약자, 그리고 자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제 노동과 현대판 노예제도

공급업체는 벌칙을 협박으로 비자발적인 업무에 해당되는 강제 야근, 인신매매, 부채 속박, 강제징용, 노예제, 노역 등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징용은 기만, 이동제한, 고립,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 협박, 신분문서 보유, 임금 보류, 부채 속박(채용료 지급, 가족 노동 또는 생활환경 포함) 또는 과도한 초과근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때 부정채용 또는 채용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 및 청년 노동자

공급업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15세 미만, 고용 최저 연령 이하 또는 관련 국가에서 의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연령 이하의 청소년을(이 중 하나라도 충족이 될 경우) 고용할 수 없습니다. 공급업체는 채용시 노동자 연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노동자가 고용될 경우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위험하거나, 해롭거나, 교육을 박탈하는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차별, 괴롭힘 또는 학대 행위

모든 노동자는 존중과 존엄성을 가지고 대우받아야 합니다. 그 어떤 노동자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언어적 괴롭힘, 학대 또는 다른 형태의 협박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채용, 보수, 승진, 징계, 해고, 퇴직 등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인종, 민족, 연령, 역할, 성별, 성 정체성,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결혼 여부, 임신, 부양가족, 장애, 사회 계층, 노조원 또는 정치적 관점에 따른 차별 또한 있어서는 안됩니다. 여성, 어린 근로자, 이주민, 원주민 등 취약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임금, 복리후생, 고용조건

노동자는 국내법이 정한 지역산업요율 또는 최저임금 중 더 높은 것을 지급받아야 하며 국가법규기준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습니다. 운영 국가에 법정 최저임금이 없는 경우, 공급업체는 공정하고 적절하게,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공급업체 비즈니스 행동 수칙

임금 수준, 생활비, 사회보장급여 및 상대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공급업체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 일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의무 산업 기준을 준수하여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령과 의무 산업 표준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급업체는 노동자가 고용된 국가의 관련 법률을 우선시하며 준수해야 합니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공급업체는 단체교섭에 가입, 연대, 조직, 참여 등의 여부를 정당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별척, 괴롭힘, 차별 또는 간섭 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토지권

개인, 원주민, 지역사회의 재산과 토지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토지의 사용 및 양도를 포함한 모든 협상은 현지 법률과 자유로운 사전 동의 및 정보, 계약 투명성, 공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역 사회

지역사회의 권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지역사회의 권한 부여와 고용기회 창출을 지원함과 동시에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2.2 환경적 책임

환경 규제 준수

공급업체는 모든 수준(지역, 국내, 국제)의 환경 규제의 필요조건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모든 환경 허가 및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환경 문제를 예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환경영향관리

공급업체는 환경영향을 측정, 통제, 그리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업체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의 환경적 측면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조직 내에 운영과 활동에 있어 환경 관행을 포함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환경 분야를 책임질 수 있는 역할을 배분합니다. 공급업체는 사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고 지속적으로 환경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3 비즈니스 청렴성

Dole은 공급업체의 행동 수칙 준수를 확인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행동 수칙 원칙을 이행하고 측정가능한 진행 상황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보고할 공급업체의 선의의 약속을 기대합니다. 개개의 경우에,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업체와 같이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완화, 보고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행동 또는 개선이 지속적으로 부족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본 공급업체가 행동 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공급업체의 지속적인 성과는 계약을 성사 또는 지속하기 위한 당사의 중요한 결정 요소입니다.

법률 준수

공급업체가 운영되는 국가에서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 무역(예: 제재, 수출 통제 및 보고 의무), 데이터 보호, 독점 금지/경쟁 법률 등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규정은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법 및 기준에 미달하는 국내법인 경우에는 상위기준을 적용합니다.

뇌물과 부패

공급업체는 고객 및 공무원과의 업무거래에 있어서 금품을 지급하거나 또는 유인책(뇌물, 촉진금, 과도한 선물 및 접대, 보조금 또는 기부금 등)을 금지합니다. 공급업체는 모든 업무처리를 투명하게 수행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사업장부와 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금품 지급 등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제 3 자를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이해 상충

공급업체가 인지하는 Dole 과의 모든 사업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해 상충은 Dole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Dole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 관계자, 정당 대표 또는 Dole 노동자의 공급업체의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이익 지분은 사업 관계를 맺기 전에 Dole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선물과 접대

공급업체가 Dole 직원 또는 대리인에게 후원하는 모든 비즈니스 접대 또는 환대는 합리적이며, 오로지 좋은 비즈니스 관계 유지를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Dole 이 향후 비즈니스를 접대하는 방법에 대한 Dole 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안됩니다. 선물은 소량이어야 하며 항상 합법적이고 회사 정책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경쟁법 및 기밀 정보

공급업체는 Dole 과의 관계에서 해당되는 모든 독점 금지와 경쟁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일에 무관용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Dole 과의 계약서에 경쟁법을 위반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안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급업체는 Dole 이 허용하지 않는 한 공급 관계에 있는 Dole 의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를 제 3 자에게 절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품 규정 준수

공급업체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가 적용 가능한 모든 규제법률 및 규정과, 약속한 사양 및 계약상의 의무를 절대적으로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행